- 2019년 상하수도사업소 -
자체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계획

Ⅰ 감사개요

○ 기　　간 : 2019. 9. 2.(월) ~ 9. 6.(금) [5일간]

○ 감사범위 : 2016. 7. ~ 2019. 7.까지 처리한 업무일체

○ 감사반 편성 : 기획감사관 외 4명

○ 감사중점

-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전반 및 공직기강 확립
-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및 각종 민원 처리실태
- 공가 등 복무관리 분야, 기록물 관리 적정여부
- 물품, 각종 공사 및 보조금 분야 추진 적정 여부
- 회계질서 문란 및 편법·변태 운영사례 집중감사 등

Ⅱ 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

❑ 총 지적건수 : 12건

○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부 서 명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회수)	
	계	주의	시정	현지시정 등	건	금액(원)
상하수도사업소	**12**	9	3	-	1	48,830

○ 신분상 조치 : 해당없음

❑ 처분내용

연번	제 목	감사결과 처분요구			비고
		행정상	재정상(원)	신분상	
계	12건	주의(9) 시정(3)	48,830	-	
1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미공개	주의	-	-	
2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및 세입조치 미이행	시정	-	-	
3	유연근무제 신청자 근무시간 미준수	주의	-	-	
4	비상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운영 부적절	주의	-	-	
5	비밀문서 및 비밀관리기록부 관리 소홀	시정	-	-	
6	상수도 감면업무 처리 업무 부적정	주의	-	-	
7	물품납품 검사업무 소홀	주의	-	-	
8	수의 견적제출(입찰) 안내공고 부적정	주의	-	-	
9	제경비(산재, 고용보험) 신고 및 납부 확인 소홀	주의	-	-	
10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48,830	-	
11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	-	
12	특별휴가 처리 부적정	주의	-	-	

처분요구서(1)

【제　목】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미공개

【현　황】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증평군 상품권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미공개 현황

연도	건　　명	구입금/원 (구입매수)	지급금/원 (지급매수)	대장등록 여부	홈페이지 공개여부	비　고
2016	상수도누수신고 포상금	250,000 (50)	105,000 (21)	여	부	이월 8매 잔량 37매
2017	상수도누수신고 포상금	-	-	-	부	잔량 37매
2018	상수도누수신고 포상금	-	-	-	부	잔량 37매
2019	상수도누수신고 포상금	-	60,000 (12)	여	부	잔량 25매

【지적내용】

○ 증평군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행정서비스 보상 차원에서 누수발견 신고자에 대하여 지역상품권을 구매하여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016년도 50매를 구매 후 이월매수 포함, 2019년도 현재까지 총 58매중 33매를 포상금으로 지급(잔량 25매)하는 등 상품권을 활용하여 상수도 누수관리에 힘써 왔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라 상품권 구매가 가능한 예산과목 및 집행용도 항목 등에 대한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집행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되어 있고,

○ 「증평군 상품권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에는 상품권의 대량구매,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 내역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동 지침에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구매종류, 구매수량, 구매액, 사용내역 등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증평군청 홈페이지에 그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 그러나, 증평군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구매 58매와 33건의 지급내역에 대하여 상품권 구매 · 사용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 활용하고는 있으나, 증평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미공개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상하수도사업소

○ 행정상 처분 : 주 의

- 내 용

증평군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증평군 상품권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숙지하시어 상품권 구매 및 지급에 대한 대장관리와 공개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처분요구서(2)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및 세입조치 미이행

【현　황】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 증평군재무회계규칙

○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내역(3*1-****-****-*1)

입금날짜	보관금 내역	금 액(원)	비 고
2011.02.28.	▣▣▣▣▣ 분뇨처리 예치금	1,600,000	향후 보증서로 변경 계획
2011.03.07.	▦▦▦▦▦ 분뇨처리 예치금	1,400,000	향후 보증서로 변경 계획
2014.03.18.	㈜◎◎	800,000	입금 내역 미상
	이자 발생분	95,213	※이자 총 세입조치금:3,728원
총보관금		3,895,213	

○ 세입세출외현금 이자발생 세입조치 내역(3#1-####-####-#1)

입금날짜	보관금 내역	금 액(원)	세입조치 여부	세입조치 날짜
2016.07.07.	상반기 이자	1,492	부	
2016.12.25.	하반기 이자	1,147	부	
2017.06.25.	상반기 이자	2,060	여	2017.07.04.
2017.12.24.	하반기 이자	1,375	부	
2017.12.29.	- (이자 포함)	227,254	보관금 내역 불분명	2017.12.29. (공문시행)
2018.06.24.	상반기 이자	1,618	여	2018.07.11.
2018.12.23.	하반기 이자	1,425	여	2018.12.27.
2019.06.23.	상반기 이자	2,844	여	2018.06.25.

【지적내용】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운용, 계약보증 · 입찰보증 · 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등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소득세 · 주민세 원천징수액, 기타 일시보관금 등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관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금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이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증평군재무회계규칙 제79조(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 제4항에서는 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하며, 제5항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을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세입세출외현금 중 반환청구권자가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관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의 귀속 또는 반환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2014. 3. 18. 입금된 보관금 800,000원에 대하여 업무

담당자간 인계·인수시에도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정당채주에 대한 확인과 원인규명도 없이 현재까지 내역불명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증평군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세입세출외현금의 귀속 또는 지급대상자 환급처리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에 소홀이 한 사실이 있음.

○ 또한, 세입세출외현금 일시보관금 중 상·하반기로 발생된 이자에 대하여 세입조치를 하여야 하나, 2016년도부터 2019년도 지금까지 이자 발생분에 대한 세입조치를 한 내역을 보면, 2017년도 상반기와 2018년 이후에는 세입조치를 하였으나, 2016년도 상·하반기와 2017년도 하반기에는 이자에 대한 세외수입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2017년도 12월 29일에는 내역을 알 수 없는 227,254원을 세외수입 조치를 하였다. 227,254원에 대한 내역 규명도 없이 2017년도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잔액을 0원으로 맞추기 위하여 이자로 통틀어 세외수입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상하수도사업소

○ 행정상 처분 : 시정·주의

- 내 용

증평군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 중 반환청구권자가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관금 800,000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귀속 또는 반환 등의 절차를 이행하시고, 세외수입 처리 업무 등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통해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처분요구서(3)

【제　　목】 유연근무제 신청자 근무시간 미준수

【현　　황】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 근태현황 : 출력물 참조

○ 감사대상 기간 중 유연근무 내역

(단위: 일)

해당연도	근 무 자	유연근무내역			준수율 (d=b/a*100)	비 고
		대상일수[1] (a)	준수일수 (b)	위반일수[2] (c)		
2017~2019	■■■	430	67	363	16%	
2019	□□□	66	53	13	81%	
2018~2019	▣▣▣	391	386	5	99%	
2017~2018	▤▤▤	305	294	11	97%	
2016	▥▥▥	209	195	15	93%	
2016	▦▦▦	245	220	25	90%	
2019	▧▧▧	144	137	7	96%	
2016	▨▨▨	211	195	16	93%	
2017~2018	▩▩▩	70	63	7	90%	
2018~2019	▲▲▲	319	285	34	90%	
2016	△△△	247	211	36	86%	
2018	▶▶▶	43	41	2	96%	
2018	▷▷▷	9	7	2	78%	
2016	◀◀◀	32	29	3	91%	

1) 유연근무 대상요일 중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일수

2) 복무관리시스템을 통한 출근·퇴근 미등록, 지참 등

【지적내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근무시간 등)에서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3조(근무시간의 변경)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또한,「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4조(근무기강 확립)에서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 따라 업무능률 향상과 사기진작 도모를 위하여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출근·퇴근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인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서 유연근무제 신청자는 출근·퇴근 시에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출근·퇴근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일부 유연근무제 신청자들이 복무관리시스템에 출근·퇴근을 등록하여야 함에도 누락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지참하는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상하수도사업소

○ 행정상 처분 : 주 의

- 내 용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전 직원 관련지침 연찬 및 직원교육 하여 주시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처분요구서(4)

【제　　목】 비상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운영 부적절

【현　　황】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증평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 규정」,「증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부적절 운영 현황

연번	직급	이름	근무 종류	근무일	대체휴무일	부적정 사유	비 고 (근무지)
1	▲▲급	◐◐◐	숙직	2017.1.12.(목)	2017.1.13.(금)	근무명령없이 휴무	재대본
2	◎◎급	◒◒◒	숙직	2018.11.19.(월)	2018.11.21.(수)	대체휴무일 부적정	배수지
3	2016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거점소독소 근무일지 분실						

【지적내용】

○「증평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 규정」 제7조(근무자의 복무) 제1항에 근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개시 10분전까지 출근하여 직전 근무자와 업무를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제4항에서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 제2조의4(비상근무 요령)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정 제2조의2(비상근무의 종류) 구분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토요일 및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야간에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증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제1항에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AI 방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자가 2017.1.12.(목) 근무 후 결재를 득하지 않고 2017.1.13.(금) 대체휴무를 하였고, 증평배수지 근무자는 2018.11.19.(월) 숙직근무 후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2018.11.20.(화)이 아닌 하루가 지난 2018.11.21.(수) 대체휴무를 하는 등 비상근무에 따른 대체 휴무를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2016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거점 소독소 근무일지를 분실하는 등 비상근무에 따른 대체 휴무를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상하수도사업소

○ 행정상 처분 : 주 의

- 내 용

전 직원 관련지침 연찬 및 직원교육하여 주시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처분요구서(5)

【제　　목】 비밀문서 및 비밀관리기록부 관리 소홀

【현　　황】

○ 관련근거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지적내용】

○ 보안업무규정 제14조(예고문)에서 비밀의 분류원칙에 따라 분류된 비밀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른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명시하기 위하여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리고, 보안업무규정 제22조(비밀관리기록부) 1항에는 각급 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접수·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항은 비밀관리기록부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는 모든 비밀과 암호자재에 대한 보안책임 및 보안관리 사항이 정확히 기록·보존되어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9조(비밀관리기록부의 사용방법) 제2항에서는 비밀을 재분류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해당란을 2개의 붉은색 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처리방법란에 명시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시행규칙 제50조(파기) 제1항에는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파쇄,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고, 제2항에서는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 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017 을지연습 실시계획을 예고문에 따라 파기한 후 비밀관리기록부를 정리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이 하는 등 비밀문서 및 비밀관리기록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상하수도사업소

○ 행정상 처분 : 시 정

- 내 용

관련법령을 숙지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즉시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처분요구서(6)

【제　　목】 상수도 감면업무 처리 업무 부적정

【현　　황】

○ 관련근거 :「수도법」,「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 부적정 처리내역

연번	성명	업무명	첨부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활용 유·무	비고 (신고일)
1	◷◷◷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주민등록등본	유	2018.1.2.
2	◶◶◶	〃	〃	〃	2019.1.8.
3	◵◵◵	〃	〃	〃	2019.2.12.
4	◴◴◴	〃	〃	〃	2019.2.12.
5	◳◳◳	〃	〃	〃	2019.2.21.
6	◲◲◲	〃	〃	〃	2019.2.25.
7	◱◱◱	〃	〃	〃	2019.2.26.
8	◰◰◰	〃	〃	〃	2019.2.26.
9	◭◭◭	〃	〃	〃	2019.3.19.
10	◮◮◮	〃	〃	〃	2019.4.12.
11	◬◬◬	〃	〃	〃	2019.4.12.
12	◫◫◫	〃	〃	〃	2019.4.19.
13	◪◪◪	〃	〃	〃	2019.4.22.
14	◩◩◩	〃	〃	〃	2019.4.26.
15	◨◨◨	〃	〃	〃	2019.4.26.
16	◧◧◧	〃	〃	〃	2019.5.7.
17	◕◕◕	〃	〃	〃	2019.5.8.
18	◔◔◔	〃	〃	〃	2019.5.13.

연번	성명	업무명	첨부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활용 유·무	비고 (신고일)
19	◓◓◓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주민등록등본	유	2019.5.14.
20	◒◒◒	〃	〃	〃	2019.5.16.
21	◑◑◑	〃	〃	〃	2019.5.17.
22	◐◐◐	〃	〃	〃	2019.5.17.
23	◎◎◎	〃	〃	〃	2019.5.17.
24	◍◍◍	〃	〃	〃	2019.5.21.
25	◇◇◇	〃	〃	〃	2019.5.24.
26	◉◉◉	〃	〃	〃	2019.5.25.
27	◈◈◈	〃	〃	〃	2019.6.5.
28	◆◆◆	〃	〃	〃	2019.6.7.
29	▣▣▣	〃	〃	〃	2019.6.11.
30	▨▨▨	〃	〃	〃	2019.6.28.

※ 감사자료 제출 재구성

【지적내용】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제3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 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제1항에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3)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수도법 시행령』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제1항3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할인율 등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음.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수도요금 등의 감면)제1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호~제3호 생략), 제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제5호 19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이하 생략). 또한,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요금의 감면) 제4항에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5항에서는 조례 제40조제1항제 5호 및 제6호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 및 제12호의3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음.

○ 그리고,『증평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제5조(전결대상 사무) 제2조에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 소관 사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별표 2에 따르면 상・하수도 사용요금 부과・징수업무는 소장전결로 되어 있음.

○ 그러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신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동의를 받아(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필요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확인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외 29건의 상수도 감면업무를 처리하면서 다자녀 가구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을 민원인으로부터 받는 등 불필요한 서류를 부당하게 받아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감면업무가 소장 전결사항임에도 내부결재 없이 처리하는 등 상수도 감면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상하수도사업소

○ 행정상 처분 : 주 의

- 내 용

관련법령을 숙지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처분요구서(7)

【제　목】 물품납품 검사업무 소홀

【현　황】

○ 물품납품 검사 조건 및 현황

- 물품제작, 운반, 조립, 시험, 시운전도

(단위 : 천원)

물품명	납품자	계약금액	검사요청일	검사일	시험운전 여·부	비 고
▥▥▥ ▥▥▥ ▥▥ ▥▥ ▥▥▥제어반	◈◈◈◈◈◈◈◈◈ 대표 ◍◍◍	52,525	2019.6.5.	2019.6.10.	부	

【지적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재질·성능 또는 규격 등의 검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8절 이행의 완료와 대가의 지급 1. 물품의 검사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 관계규정과 이 기준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019. 4. 29일 계약하고 6. 5일 납품한 [redacted]제어반 납품검사에 있어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방서에 검사 조건으로 시운전을 실시하여 시운전 성능보장을 위한 성능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기관의 보험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대한 성능을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납품검사 하였으며, 이로 인해 향후 하자기한 내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발생 원인의 책임 소지 여부를 명확하게 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상하수도사업소

○ 행정상 처분 : 주 의

- 내 용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처분요구서(8)

【제　목】 수의 견적제출(입찰) 안내공고 부적정

【현　황】

○ 공 고 명 : 2019년 ⊠⊠⊠ ⊠⊠⊠⊠개선공사

○ 공 고 일 : 2019. 3. 13.

○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 공고내용

-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등록 및 개찰일, 계약방법
- 참가자격,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기타사항 등

○ 관련근거 :『지방계약법』제9조(계약의 방법)

【지적내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5조(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제4항에 따라 발주자는 제1항 [4]또는 제3항[5]에 따라 계상한 안전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 이와 같은 사항은 위 기준의 주요 개정사항으로(2018. 12. 3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율 적용 배제, 계상방법, 입찰참가자에게 사전고지 등을 신설・개정하여 2019. 1. 1.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통보하였다[6].

---

4)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5)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 상의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기술부-1122(2018. 10. 2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46(2019. 1. 3.)

○ 그러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019. 3. 13. 2019년 ▨▨▨ ▨▨▨▨개선공사수의 견적제출(입찰) 안내공고를(2019. 3. 13.) 함에 있어 위 기준 제5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사항을 견적제출(입찰)참가자에게 사전에 미리 고지해야[7] 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안내공고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상하수도사업소

○ 행정상 처분 : 주 의

- 내 용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향후 입찰공고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7)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처분요구서(9)

【제　목】 제경비(산재, 고용보험) 신고 및 납부 확인 소홀

【현　황】

○ 사 업 명 : ■■■■■■■ ■■■ ■■■■■ 공사
○ 기　　간 : 2017. 6. 5. ~ 2017. 6. 13.
○ 사업내용 : ◍◍◍ ◍◍◍◍◍ 1식
○ 사 업 비 : 11,880천원
○ 도 급 자 : ㈜◎◎◎◎◎◎ 대표 ◎◎◎
○ 원가계산 제경비(산재, 고용보험) 계상
 - 산재보험 : 234,548원
 - 고용보험 : 53,699원
○ 제경비(산재・고용보험) 증빙자료 제출 여부 : 미제출

【지적내용】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제7항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특히 산재, 고용보험의 경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에 따라 사전확정주의원칙으로 정산이 가능하지 아니하며 가입 및 납부확인으로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증빙해야 한다.

○ 그러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 ■■■■ ■■■■■■ 공사를 추진하고 준공함에 있어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에 계상된 산재·고용보험에 대한 증빙자료로 해당 공사명으로 신고 및 납부한 (산재·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증명서 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처리 하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이 한 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상하수도사업소

○ 행정상 처분 : 주 의

- 내 용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처분요구서(10)

【제　　목】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현　　황】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표 1]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산출근거

구분	대상자	정규 근무일수 (A)	연가 등 미근무일수 (B)	출근일수 (A-B=C)	출근미달일수 (15일-C)
계	6건				
2017. 10월	▣▣▣	16	1.06	14.94	1일
	▥▥▥	16	1.37	14.63	1일
2018. 09월	◐◐◐	17	3.06	13.94	2일
2019. 02월	◎◎◎	17	2.18	14.82	1일
	▩▩▩	17	3	14	1일
	□□□	17	2.06	14.94	1일

○ [표 2]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

구분	대상자	정액분 ⓐ	초과분 ⓑ	미달일수 ⓒ	단가 ⓓ	적정지급액[8]	지급액	과지금액
계	6건					2,463,760원	2,512,590원	48,830원
2017. 10월	▣▣▣	10	32	1일	10,003원	413,450원	420,120원	6,670원
	▥▥▥	10	24	1일	10,003원	333,430원	340,100원	6,670원
2018. 09월	◐◐◐	10	47	2일	10,299원	573,310원	587,040원	13,730원
2019. 02월	◎◎◎	10	8	1일	10,509원	182,150원	189,160원	7,010원
	▩▩▩	10	53	1일	10,509원	655,060원	662,060원	7,000원
	□□□	10	17	1일	11,634원	306,360원	314,110원	7,750원

8) 산출근거 : {(ⓐ+ ⓑ)*ⓓ}-**(ⓐ*ⓓ*ⓒ/15)**

【지적내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하 “실적분”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하고,

○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현업공무원등이 아닌 공무원(이하 “일반대상자”라 한다)에게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이하 “정액분”이라 한다)을 추가 지급할 수 있는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이 정액분은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으로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 또한,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표1]과 같이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의 사유로 근무하지 아니하여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2]와 같이 2017. 10월 ~ 2019년 2월까지 월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금액을 감하지 않은 채 총 6건(5명) 48,830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과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상하수도사업소

○ 행정상 처분 : 시 정

- 내　　용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시 월 정규근무일수 및 출근미달일수를 반영하여 수당 지급토록 하고, 과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하여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회수 48,830원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처분요구서(11)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현　황】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현　　황

(단위 : 원)

사용일자	사용내역	지급액	통계목	비고
	7건	347,760		
2017.03.09.	내방객을 위한 차 구입	48,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17.05.10.	청사 내방객을 위한 간식구입	27,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18.01.31.	청사 내방객을 위한 간식구입	52,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18.03.08.	청사 내방객을 위한 음료구입	105,6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18.03.26.	청사 내방객을 위한 간식구입	30,28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18.04.16.	청사 내방객을 위한 음료 및 간식 구입	42,88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18.07.06.	청사 내방객을 위한 음료구입	42,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적내용】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가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제의 장 등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관의 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으로,

○ 같은 규칙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에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로 시책 또는 지역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현업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별표의 모든 항목이 개별적인 집행내용과 무관하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구분없이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며, 업무추진비 편성내역과 집행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 그러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인지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가 아닌 청사 내방객을 위한 음료 및 간식 구입비로 2017. 3월 ~ 2018. 9월까지 총 7건, 347,760원에 대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상하수도사업소

○ 행정상 처분 : 주 의

- 내 용

업무추진비 집행 시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업무추진비 직무활동에 부합하도록 구분하여 집행하고, 임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령 숙지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

처분요구서(12)

【제　목】 특별휴가 처리 부적정

【현　황】

○ 관련근거

-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7

○ 특별휴가 처리 현황

신청인	사용기간	특가구분	특가사유	적정휴가
▣▣▣	2016-07-08(1일)	수업휴가	자녀 유치원행사 참석	자녀돌봄휴가
▤▤▤	2016-07-22(1일)	수업휴가	학부모 진로상담	자녀돌봄휴가
▥▥▥	2016-09-27(1일)	수업휴가	자녀 학교 행사 참겨	자녀돌봄휴가
▦▦▦	2016-10-06(1일)	수업휴가	어린이집 행사참석	자녀돌봄휴가
▧▧▧	2016-10-07(1일)	수업휴가	자녀어린이집 행사 참관	자녀돌봄휴가
▨▨▨	2016-10-25(1일)	기타	학교 행사 참석	자녀돌봄휴가
▩▩▩	2016-11-03(1일)	기타	자녀 학습발표회 참석	자녀돌봄휴가
▲▲▲	2016-11-18(1일)	기타	어린이집 행사 참여	자녀돌봄휴가
△△△	2016-11-25(1일)	기타	자녀 유치원 행사 날짜 변경	자녀돌봄휴가
▶▶▶	2016-12-23(1일)	기타	자녀 어린이집 행사 참여	자녀돌봄휴가
▷▷▷	2016-12-29(1일)	기타	학교행사	자녀돌봄휴가
▼▼▼	2017-03-03(1일)	기타	자녀입학식참석	자녀돌봄휴가
▽▽▽	2017-03-17(1일)	기타	학교행사	자녀돌봄휴가
◀◀◀	2017-03-29(1일)	기타	학교행사	자녀돌봄휴가
◁◁◁	2017-04-14(1일)	기타	어린이집 행사	자녀돌봄휴가
◆◆◆	2017-05-08(1일)	기타	학교행사 참석	자녀돌봄휴가
◇◇◇	2017-05-12(1일)	기타	학교행사 참석	자녀돌봄휴가
◈◈◈	2017-05-24(1일)	기타	학부모 참관수업 참석	자녀돌봄휴가
◉◉◉	2017-09-22(1일)	기타	학부모 행사 참석	자녀돌봄휴가
◍◍◍	2017-11-10(1일)	기타	학부모 참여수업 참석	자녀돌봄휴가
◎◎◎	2018-02-07(1일)	기타	자녀 졸업식	자녀돌봄휴가
◑◑◑	2018-04-27(1일)	기타	학교행사 참석	자녀돌봄휴가

【지적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8항에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7조(특별휴가)3항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제외한다)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 그러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자녀의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하여 “자녀돌봄휴가”가 아닌 ”수업휴가, “기타휴가”로 허가하는 등 2016. 7월 이후 특별허가 신청한 22건에 대해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부서명 : 상하수도사업소

○ 행정상 처분 : 주 의

- 내 용

특별휴가 신청시 사유에 적합한 휴가의 종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상 처분 : 해당 없음

○ 신분상 처분 : 해당 없음